

수원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가단514872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음 담당변호사 권용민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김성민

**변론 종결**2021. 4. 15.

**판결 선고**2021. 6. 24.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D생) 사이에 2019. 7. 2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20. 2. 18. 접수 제212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1999. 7. 15. 수원지방법원에 C, F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9. 11. 30. "C, F은 연대하여 E에게 10,165,443원 및 이에 대한 1999.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0. 1.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E의 정리회사 G 주식회사는 2009. 11. 2. 위 판결금 채권을 주식회사 H에게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H는 2013. 12.경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C의 부 I이 2019. 7.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 J(상속지분 3/13), 자녀들 K, 피고, C, L, M(상속지분 각 2/13)이 있었다.

라. 피고는 I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20. 2. 18. 접수 제21269호로 2019. 7. 21.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C는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N단체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수원시청, 동수원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들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하였는데, 위와 같은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C는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9. 7. 21.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20. 2. 18. 접수 제21269호로 2019. 7.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사해의사를 가지고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상속분을 포기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C가 피고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C가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대물변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는, 자신이 부모님을 홀로 부양해왔고, 가족들을 돌보아 왔으므로 가족들의 합의에 따라 C가 상속분을 포기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그 기여분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되는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로 인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옥희**

별지

1)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하고 있으나, 원상회복은 채무자에게 말소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와 같이 선택하여 판단한다.